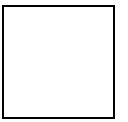


태아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에 대한 사전 확인 및 동의서 (1/2)



- 피험자가 전문을 읽고 충분히 이해한 후 동의하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, 반드시 피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.
- 피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피험자의 성명을 기입하고, 대필자도 서명해 주세요.
- 주식회사 seeDNA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선택도 가능합니다.
- 아래 항목에서 동의할 수 없는 항목이나 질문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연락주시요.
- **서명란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, 본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**

1. 검사 목적

회사가 제공하는 태아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는 **임신 중절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.**
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.

2. 검체 채취

- A) 의뢰인은 회사에서 제공한 안내 사항을 따라 **올바른 정보를 제공**하고, 피험자 간의 검체가 뒤바뀌지 않도록 검체 채취를 실시합니다.
- B) 모친(母)의 혈액은 반드시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**임신 6주째 이후**에 채혈하여 채혈한 당일에 반송합니다.

3. 검사 방법

- A) 모친(母)의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하여 부(父)로 추정되는 남성의 검체로부터 추출한 DNA 와 모친(母)의 혈장에서 추출한 태아의 DNA, 그리고 모친(母)의 혈액에서 추출한 모친(母)의 DNA 를 최신 분자 생물학적 방법인 NGS(Next Generation Sequencing)로 해석하고 SNVs 를 비교함으로써 혈연관계의 유무를 판정합니다.
- B) 의뢰인이 제출한 검체는 회사에 의해 익명화되며, 원칙적으로 회사의 도교 검사실에서 혈연관계 확인을 위하여 검사됩니다. 다만, 지진,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교 검사실에서의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, 익명화 되어 외부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.

4. 검사 결과에 대한 승낙

- A) 피험자가 수혈 또는 골수 이식을 받았을 경우, 부(父)로 추정되는 남성끼리 가까운 혈연관계일 경우, 태아가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, 체외 수정에 의한 임신의 경우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회사에 연락합니다.
- B) **피험자의 DNA 에 발생한 돌연변이, 결손, 치환, 키메라 등의 이유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. 만일 정확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, 검사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지 않습니다.**
- C) 이 검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생물학적,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며 **100%의 정확한 검사는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. 또한, 검체의 상태에 따라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.**
- D)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검사 결과에 따라 의뢰인 및 피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.

5. 결과 보고 예정일

- A) 결과보고 예정일은 피험자 전원의 검체가 회사에 도착한 영업일을 0 일째로 하여 계산하고, 오후에 검체가 도착하면 1 영업일 가산됩니다. 단, 영업일은 토·일·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만 계산합니다.
- B) 검체가 회사에 도착한 시점에 검사가 시작됩니다.
- C) 각 피험자의 검체 도착일이 다른 경우에는 피험자 전원의 검체가 갖추어진 영업일부터 감정이 개시되어 결과보고 예정일이 확정됩니다.
- D) 검체의 상태 또는 운송 사고, 운송 지연에 따른 검체의 손상 등 회사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결과 보고 예정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,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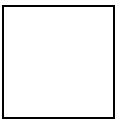
6. 검사 결과 보고

- A) 검사 결과는 신청 시에 지정된 방법 (서면, 홈페이지) 의해 보고됩니다.
- B) 부(父)로 추정되는 남성과 태아 사이의 혈연관계에 대한 보고는 친부 계수 99.99% 이상 또는 0%로 보고합니다.
- C) 의뢰인 이외에 검사 결과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검사 결과 문의에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.
- D) 검사 완료 후 고객의 유전 정보 및 검사 결과는 1 년간 보관 후 안전을 위해 온라인 상에서 폐기되며, 이후 4 년 동안 본인 여부 확인 통해 서면으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E) 검사 중의 진행 상황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.

7. 검사 취소

- A) 의뢰인의 사정에 의한 취소의 경우, 검체 채취 키트 발송 전에는 의뢰 총액의 4%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.
- B) 검체 채취 키트 발송 후, 의뢰인의 사정에 의해 7 일 이내에 취소하실 경우, 검사 비용의 45%를 환불해드립니다.
- C) 검체 채취 키트 발송 후 7 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 (단순 번심에 의한 환불 시 수수료는 고객님 부담입니다.)
- D) 검체가 연구소에 도착한 후에는 취소에 따른 환불이 불가능하며, 검사 신청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, 의뢰인의 사정에 의한 취소로 간주되며 취소에 따른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.
- E) 키트 발송은 '키트 발송 알림' 메일로 통지해 드립니다. 통지 후 의뢰인 사정에 의한 취소는 발송 후 취소로 취급됩니다.

태아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에 대한 사전 확인 및 동의서 (2/2)



8. 무료 재검사와 그 이후의 검사에 대하여

- A) 만일 1 차 검사에서 「관정 불가」 결과가 나왔을 경우, 무료 재검사로 2 차 검사 신청을 하시거나, 무료 재검사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검사 비용의 30%를 환불해드립니다.
- B) 2 차 검사 이후의 검사 시 제출해주시는 부(父)로 추정되는 남성의 검체는 구내 상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 만약 특수 검체를 제출하실 경우, 특수 검체 요금이 별도 발생하며 기간이 추가 소요됩니다.
- C) 2 차 검사 이후의 검사 시 모친(母)의 혈액 재제출이 필요한 경우, 2 차 검사는 무료 재검사로 해드립니다. 3 차 검사에서 모친(母) 혈액 재제출이 필요한 경우, 별도로 33,000 엔의 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.
- D) 혈액에 의한 3 차 검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검사는 종료되며, 의뢰 총 비용의 30%를 환불해 드립니다.

9. 신청 시 검사 요금 이외의 비용

- A) 혈액 검체를 제출하실 때, 채혈 비용은 의뢰인의 부담입니다.
- B) 신청한 검사 외 검체 채취 키트 재발송 또는 서면 결과 보고서의 추가 발행 등 의뢰인의 사정에 의해 별도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, 의뢰 시 검사 비용과는 별도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10. 기타 환불에 관한 사항

- A) 검체의 상태 또는 운송 사고, 운송 지연에 따른 검체의 손상 등 회사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결과 보고일이 지연되는 경우는 옵션 요금을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.
- B) 의뢰인 사정에 의한 취소 또는 무료 재검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, 환불 시 은행 송금 수수료(신용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 결제 수수료)는 의뢰인의 부담입니다.
- C) 만일 피험자의 DNA 상에 존재하는 키메라 등의 돌연변이 또는 회사의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휴먼에러로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경우, 회사에 지불한 검사 비용 전액을 환불하고 의뢰인은 환불된 검사 비용 이상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.

11. 임신 증명서 또는 진단서 제출

- A) **채혈 시점에서의 임신 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는 무료 재검사/환불 보증에서 제외됩니다.**
- B) 무료 재검사 또는 환불 시에는 첫 번째 채혈 시점에서의 임신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12. 검체 보존 및 개인 정보 보관

- A) 의뢰인으로부터의 메일, 개인 정보는 익명화된 상태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활용됩니다.
- B) 검체와 검체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익명화된 상태에서 태아의 유전 질환 진단법(NIPT)의 연구와 검사 정확도 향상을 위해 활용됩니다.
- C) 분석 및 연구가 종료된 검체는 의뢰인에게 통보·승인 없이 지정 업체에 의해 폐기됩니다. 검체의 보관을 희망하실 경우 검사 개시 전에 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.

13. 면책 조항

- A) 검체 손상, 의뢰인의 서류 기입 실수 또는 검체 채취 실수 등으로 인한 결과 판정 실수에 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B) 피험자의 DNA 상에서 발생한 돌연변이, 결손, 치환, 키메라 등의 회사에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결과 판정 오류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C) 어떠한 경우에도 위의 환불 규정(항목 7-10 참조)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.

<본 검사 사업자>

사 업 자 : 주식회사 seeDNA 법의학 연구소

위 치 : 121-0813 도쿄도 아다치구 타케노즈카 3-10-1 타케노즈카 빌딩 2층

전화번호 : 03-6659-2997

대 표 자 : 김 기범 (이사)

의뢰인은 검사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, 검사에 동의합니다.

서명일자			검사 대상자 이름(서명)
____년	____월	____일	_____
____년	____월	____일	_____
____년	____월	____일	_____

- 피험자가 전문을 읽고 충분히 이해한 후 동의하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, 반드시 피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
- 피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피험자의 성명을 기입하고, 대필자도 서명해 주세요.
- 주식회사 seeDNA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선택도 가능합니다.
- 아래 항목에서 동의할 수 없는 항목이나 질문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연락주시요.
- **서명란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, 본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**

1. 검사 목적

회사가 제공하는 태아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는 **임신 중절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.**
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.

2. 검체 채취

- A) 의뢰인은 회사에서 제공한 안내 사항을 따라 **올바른 정보를 제공**하고, 피험자 간의 검체가 뒤바뀌지 않도록 검체 채취를 실시합니다.
- B) 모친(母)의 혈액은 반드시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**임신 6주째 이후**에 채혈하여 채혈한 당일에 반송합니다.

3. 검사 방법

- A) 모친(母)의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하여 부(父)로 추정되는 남성의 검체로부터 추출한 DNA 와 모친(母)의 혈장에서 추출한 태아의 DNA, 그리고 모친(母)의 혈액에서 추출한 모친(母)의 DNA 를 최신 분자 생물학적 방법인 NGS(Next Generation Sequencing)로 해석하고 SNVs 를 비교함으로써 혈연관계의 유무를 판정합니다.
- B) 의뢰인이 제출한 검체는 회사에 의해 익명화되며, 원칙적으로 회사의 도교 검사실에서 혈연관계 확인을 위하여 검사됩니다. 다만, 지진,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교 검사실에서의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, 익명화 되어 외부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.

4. 검사 결과에 대한 승낙

- A) 피험자가 수혈 또는 골수 이식을 받았을 경우, 부(父)로 추정되는 남성이 가까운 혈연관계일 경우, 태아가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, 체외 수정에 의한 임신의 경우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회사에 연락합니다.
- B) **피험자의 DNA 에 발생한 돌연변이, 결손, 치환, 키메라 등의 이유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. 만일 정확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, 검사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지 않습니다.**
- C) 이 검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생물학적,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며 **100%의 정확한 검사는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. 또한, 검체의 상태에 따라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.**
- D)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검사 결과에 따라 의뢰인 및 피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.

5. 결과 보고 예정일

- A) 결과보고 예정일은 피험자 전원의 검체가 회사에 도착한 영업일을 0 일째로 하여 계산하고, 오후에 검체가 도착하면 1 영업일 가산됩니다. 단, 영업일은 토·일·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만 계산합니다.
- B) 검체가 회사에 도착한 시점에 검사가 시작됩니다.
- C) 각 피험자의 검체 도착일이 다른 경우에는 피험자 전원의 검체가 갖추어진 영업일부터 감정이 개시되어 결과보고 예정일이 확정됩니다.
- D) 검체의 상태 또는 운송 사고, 운송 지연에 따른 검체의 손상 등 회사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결과 보고 예정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,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6. 검사 결과 보고

- A) 검사 결과는 신청 시에 지정된 방법 (서면, 홈페이지) 의해 보고됩니다.
- B) 부(父)로 추정되는 남성과 태아 사이의 혈연관계에 대한 보고는 친부 계수 99.99% 이상 또는 0%로 보고합니다.
- C) 의뢰인 이외에 검사 결과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검사 결과 문의에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.
- D) 검사 완료 후 고객의 유전 정보 및 검사 결과는 1 년간 보관 후 안전을 위해 온라인 상에서 폐기되며, 이후 4 년 동안 본인 여부 확인 통해 서면으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E) 검사 중의 진행 상황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.

7. 검사 취소

- A) 의뢰인의 사정에 의한 취소의 경우, 검체 채취 키트 발송 전에는 의뢰 총액의 4%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.
- B) 검체 채취 키트 발송 후, 의뢰인의 사정에 의해 7 일 이내에 취소하실 경우, 검사 비용의 45%를 환불해드립니다.
- C) 검체 채취 키트 발송 후 7 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 (단순 번심에 의한 환불 시 수수료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.)
- D) 검체가 연구소에 도착한 후에는 취소에 따른 환불이 불가능하며, 검사 신청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, 의뢰인의 사정에 의한 취소로 간주되며 취소에 따른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.
- E) 키트 발송은 '키트 발송 알림' 메일로 통지해 드립니다. 통지 후 의뢰인 사정에 의한 취소는 발송 후 취소로 취급됩니다.

8. 무료 재검사와 그 이후의 검사에 대하여

- A) 만일 1 차 검사에서 「관정 불가」 결과가 나왔을 경우, 무료 재검사로 2 차 검사 신청을 하시거나, 무료 재검사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검사 비용의 30%를 환불해드립니다.
- B) 2 차 검사 이후의 검사 시 제출해주시는 부(父)로 추정되는 남성의 검체는 구내 상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 만약 특수 검체를 제출하실 경우, 특수 검체 요금이 별도 발생하며 기간이 추가 소요됩니다.
- C) 2 차 검사 이후의 검사 시 모친(母)의 혈액 재제출이 필요한 경우, 2 차 검사는 무료 재검사로 해드립니다. 3 차 검사에서 모친(母) 혈액 재제출이 필요한 경우, 별도로 33,000 엔의 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.
- D) 혈액에 의한 3 차 검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검사는 종료되며, 의뢰 총 비용의 30%를 환불해 드립니다.

9. 신청 시 검사 요금 이외의 비용

- A) 혈액 검체를 제출하실 때, 채혈 비용은 의뢰인의 부담입니다.
- B) 신청한 검사 외 검체 채취 키트 재발송 또는 서면 결과 보고서의 추가 발행 등 의뢰인의 사정에 의해 별도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, 의뢰 시 검사 비용과는 별도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10. 기타 환불에 관한 사항

- A) 검체의 상태 또는 운송 사고, 운송 지연에 따른 검체의 손상 등 회사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결과 보고일이 지연되는 경우는 옵션 요금을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.
- B) 의뢰인 사정에 의한 취소 또는 무료 재검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, 환불 시 은행 송금 수수료(신용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 결제 수수료)는 의뢰인의 부담입니다.
- C) 만일 피험자의 DNA 상에 존재하는 키메라 등의 돌연변이 또는 회사의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휴먼에러로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경우, 회사에 지불한 검사 비용 전액을 환불하고 의뢰인은 환불된 검사 비용 이상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.

11. 임신 증명서 또는 진단서 제출

- A) **채혈 시점에서의 임신 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는 무료 재검사/환불 보증에서 제외됩니다.**
- B) 무료 재검사 또는 환불 시에는 첫 번째 채혈 시점에서의 임신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12. 검체 보존 및 개인 정보 보관

- A) 의뢰인으로부터의 메일, 개인 정보는 익명화된 상태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활용됩니다.
- B) 검체와 검체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익명화된 상태에서 태아의 유전 질환 진단법(NIPT)의 연구와 검사 정확도 향상을 위해 활용됩니다.
- C) 분석 및 연구가 종료된 검체는 의뢰인에게 통보·승인 없이 지정 업체에 의해 폐기됩니다. 검체의 보관을 희망하실 경우 검사 개시 전에 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.

13. 면책 조항

- A) 검체 손상, 의뢰인의 서류 기입 실수 또는 검체 채취 실수 등으로 인한 결과 판정 실수에 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B) 피험자의 DNA 상에서 발생한 돌연변이, 결손, 치환, 키메라 등의 회사에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결과 판정 오류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C) 어떠한 경우에도 위의 환불 규정(항목 7-10 참조)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.

<본 검사 사업자>

사 업 자 : 주식회사 seeDNA 법의학 연구소
 위 치 : 121-0813 도쿄도 아다치구 타케노즈카 3-10-1 타케노즈카 빌딩 2층
 전화번호 : 03-6659-2997
 대 표 자 : 김 기범 (이사)

의뢰인은 검사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, 검사에 동의합니다.

※ 오른쪽 서명일 · 서명란에 검정색 펜으로 기입해 주세요.

				서명일자	검사 대상자 이름(서명)	
2020	년	5	월	5	일	홍길동
2020	년	5	월	5	일	김철수
2020	년	5	월	5	일	김영희